

의안번호	2217515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6. 7. 28.
추 계 번호	26B1499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물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물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광역시자치단체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광역시자치단체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목적)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2. 상세 사유

□ 이전기관의 이전 대상 지역 확대 등(안 제1조 등)

- 현행법은 해양수산물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

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게 신축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임대료 감면, 정착비 지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예산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¹⁾

- 2026년 7월 기준으로 현행법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을 지원한 사례는 해양수산부 본부의 부산 이전 사례가 유일하며(2025.12.23 부산 청사 개청), 이후 추가로 현행법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기관·기업은 없는 상황임

[표 1] 해양수산부 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6예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7041-303)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및 안정적 정주·근무 여건 조성	
직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	전월세	전세이자 및 월세비용 지원	3,230
	이주지원	이주지원비 지급	1,723
	이사비	이사 비용 지급	2,717
	버스		2,432
	고속철도	통근버스 임차료, 고속철도 요금 할인 등	441
	공용차량	교통지원	364
	업무택시		400
	합 계		11,307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외에 부산항 항만구역²⁾으로 이전하는 기관·기업을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이전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게 현행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확대되는 이전 대상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기업, 해당 기관·기업별 지원 기준·내용·임직원 수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이전 대상 기관·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제12조(예산 지원)

2) 부산항의 일부인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